



보도 일시	2022. 11. 1.(화) 12:00 (수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10. 31.(월)
담당 부서	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	책임자	과 장 이경빈 (044-201-6790)
		담당자	사무관 곽종선 (044-201-6796)

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-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관리

- ☐ 배기소음 95dB 초과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·고시
- ☐ 지자체,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95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 가능

- ☐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(수면방해 등)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(이동소음원 지정 고시)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※ 올해 3.15. 환경부 보도자료(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만에 크게 달라집니다) 참조

- ☐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(dB)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※ (기존 이동소음원) ① 영업용 확성기, ② 행락객 음향기기, ③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

- ☐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.

-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'이동소음 규제지역'을 새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*하여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, 대상,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.

*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지자체가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됨

○ 다만,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.

□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,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,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(튜닝)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(10만원) 부과 가능

□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,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.

□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“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”라며, “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1.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 제도.

2. 질의응답. 끝.



□ 목 적

- 지자체의 장이 이동소음원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시간 제한 등 소음을 규제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□ 이동소음 관리체계

- 환경부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동소음원의 종류*를 정함

* ①영업·홍보용 확성기, ②행락객 사용 음향기계 및 기구, ③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, ④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(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, 금번 제정 고시)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동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,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함

*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주거지역,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정온한 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정하여 고시

** 지자체의 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에서 이동소음원의 사용제한 지역·대상·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

□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현황

- '21년까지 전국 106개 시·군·구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함

<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현황 >

(단위 : 개)

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전북	전남	경북	경남
106	25	16	8	8	5	5	5	11	6	1	5	1	3	7

① 이동소음원으로 고소음 이륜자동차가 추가되면, 당장 운행이 제한되는지?

☞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제·개정한 이후부터 해당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적용됨

- 이번에 환경부가 제정한 고시는 이동소음원의 종류에 배기소음이 95데시벨(dB)을 초과하는 고소음 이륜차를 추가하여, 지자체가 이동소음원의 사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,
- 실제 운행제한은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·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제·개정한 이후부터 각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적용됨

②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(105 dB)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 고소음 이륜차 소음기준(95dB)의 차이는 무엇인지?

☞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
 ☞ 이동소음원에 해당되는 고소음 이륜차 소음기준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정해진 사용제한 시간에만 적용되는 기준

-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(현행 배기소음 105 dB)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, 모든 운전자가 항상 준수해야 함
- 이동소음원 규제는 지자체별로 주거지역, 종합병원 주변 등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특별히 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사용 제한 시간 동안 적용되는 기준임

※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사용제한 대상·지역·시간 등을 정해 관리

③ 이동소음원 규제기준을 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보다 강한 95 dB로 설정한 이유는?

☞ 지자체 건의, 주거지역 등 소음관리 필요성, 향후 소음허용기준 강화 계획 등을 반영하여 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(105dB)보다 강화된 95dB로 설정

- 현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(배기소음 105 dB)은 기준값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,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지자체의 현장 단속도 어렵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함
- 환경부는 향후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정*(86~95dB 수준)을 추진할 예정으로, 이에 상응하여 우선 주거지역 등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이동소음원 규제 기준을 강화함

* 올해 3.15. 환경부 보도자료(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만에 크게 달라집니다) 참조

④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면, 배달용 이륜차 등 생계형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?

☞ 소음증폭 튜닝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중·소형 이륜차는 규제 미해당

- 배달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중·소형 이륜차의 인증 시 배기소음도는 통상 90 dB을 넘지 않으며, 최대 93 dB로 나타남(국립환경과학원)
 - 따라서, 95 dB을 초과하는 소음증폭 튜닝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배달용 이륜차는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
 - 또한,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대상·시간 등을 적절히 설정하여 운영하고, 미리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치도록 협조할 예정임